

의안
번호

439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03. 19.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경수현의원 외 13명

나. 의안번호 : 제439호

다. 제출일자 : 2025. 02. 28.

라. 회부일자 : 2025. 03. 13.

2. 제안이유

- 상징물은 도시의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의미하여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우리구 상징물 관련 규정은 예규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일관된 상징물 관리에 한계가 있어,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우리구 상징물의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상징물의 종류, 제정·변경 또는 폐지(안 제3조~제4조)
- 다. 상징물의 관리 등, 관련 사업 등(안 제5조~제6조)
- 라. 상징물의 사용승인, 사용료 등, 위반 시 조치사항(안 제7조~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3. 06. ~ 2025. 03. 12.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제정안은 성북구의 상징물이 1994년 5월 3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것을 조례로 규정하여 상징물의 위상 제고와 대표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¹⁾전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구 상징물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주요 내용

- 안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상징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상징물의 종류)는 상징물의 종류를 정하고 별표를 통해 휘장, 자연상징물, 구기, 구색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여 우리 구의 정체성을 구체화함.
- 안 제4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는 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시 구청장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이는 상징물의 잦은 변경 등은 성북구 이미지에 대한 혼란을 주고, 시설물에 부착된 상징물의 교체 등으로 인한 예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변경 등을 예방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지방자치법」 제3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안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는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상징물로서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상징물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성북구청 시각표시물 표준화 지침 등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구의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와 제8조(사용료 등)는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승인 절차와 사용료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9조(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안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그동안 성북구를 대표해온 상징물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규정」에 의거 운영돼 오던 업무의 근거를 조례로 격상하여 법제화함으로써 구 상징물의 위상 및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